

고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시 보

【제 1115 호】

2014년 10월 10일 (금)

선 람	기 관 의 장

회 랑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고시
제2014-297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1
고시(대화·가좌·풍식사 구역 외)

발행 : 고 양 시

편집 : 공보담당관

(우) 412-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(주교동 600) ☎ (031) 8075-2095

고양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대화·가좌·풍식사 구역 외)

1. 고양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 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75-3067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10. 10.

고 양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3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4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공간시설

가) 녹지

■ 결정변경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53	녹지	완충녹지	대로 3-27호선변	7,520	감)7,520	-	고양시 고시 제2008-172호 (2008.10.31)	풍·식사 구역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53	완충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폐지 •면적감소(7,520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완충녹지 내 기 개발된 근린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완충 녹지 개설의 실효성이 적고, 향후 사업집행 장기화에 따른 폐지

5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6.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결정변경조서

적용 구역	대상지		허용용도	비고 (권장용도)
일산 구역 등 14개소 주택 용지	단독 주택 용지	기정	•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 제외)	
		변경	•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번호	계획부문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-	건축물 용도	•단독주택용지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(안마원) 허용	•관련 법령 및 조례상 모든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 마원)을 허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·외의 형평성 제고 및 관련 민원 해결

나.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결정변경조서

도면 번호	위 치	결정(변경)내용		비 고
-	화정동 1008	건축 한계선	기정	- 과도한 건축한계선 축소로 원활한 개발 유도
			변경	
-	풍식사 지구 (대로3-27 호선 구간)	건축 한계선	기정	- 보도 폭원이 협소함에 따라 주민 편의 및 개방감을 위해 건축한계선 결정
			변경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번호	계획부문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-	건축 한계선	•건축한계선을 40m에서 10m로 변경	•과도한 건축한계선 규제로 건축행위가 어려움에 따라 건축한계선 축소
-	건축 한계선	•건축한계선을 1.5m로 결정	

7.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. 가좌, 대화, 풍·식사 구역 공동개발

■ 결정변경조서

도면 번호	위 치	결정(변경)내용		비 고
	단독주택 용지	공동 개발	기정	
			변경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번호	계획부문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	공동개발	•공동개발(규제) → 공동개발(권장)	•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여 경직적 필지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재산권 제고 및 개발활성화 유도

□ 결정도면 : 게재 생략